

## 아나키의 經濟學

崔炳瑞

---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전통에 기능하여 아나키적 자연상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아나키적 투쟁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만장일치적 합의를 통한 사회계약을 수렴하게 되며, 나아가서 보다 협동적이고 질서가 잡힌 사회로 전환되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무정부적 자연상태의 정의와 아나키적 상황의 목적 및 균형상태를 논의하고 아나키적 환경의 극복방법을 제시하며 협동과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 I. 머리말

人間이 共同體를 形成하기 전의 自然的 상태가 '歷史的'으로 과연 어떠한가 혹은 '假說的'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사실은 모든 사회과학자들의 본원적인 탐구의 시작이나 그 연구의 方向을 결정짓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Hobbes는 일찍이 그의名著『Leviathan』에서 "自然은 人間을 平等하게 창조했다"고 갈파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사상을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原初의 상태에서의 대략적 平等性(rough equality in the primitive state)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이야말로 기실 社會계약론의 傳統의 출발점이 된다. 정당성을 갖는 사회계약의 出現 내지 成立은 그 사회계약에 참여한 個人들이 본질적으로 合理的이고, 獨立的이며, 同等하고 公平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假定의 기반 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Rousseau나 Locke와 같은 古典的 契約론자뿐만 아니라 Rawls나 Buchanan과 같은 新契約주의자들의 이론에서도 이 점은 共同 論理의 기저를 이룬다.<sup>1)</sup>

사회계약론의 비판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사회계약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한 사

---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성북구 월곡동 23-1, 136-714.

1) 新契約주의의 소개에 관한 논문으로는 Gorden [7] 참조.

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하여 사회구성원 전원의 승낙에 의한 '계약을 인류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에 있다고 한다.<sup>2)</sup> 또한, 국가 혹은 사회의 성립이 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과 제도에 관한 구성원들간의 협상과 동의에 기초하며 나아가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이 그 구성원들의 同意에 따른 사회의 기본制度에 대한 재협상(renegotiation)과 修整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 혹은 강한 집단이 약자 혹은 약한 집단을 무력이나 위협으로 정복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정복과 복속 아니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되어 왔고 발전되어 온 것이 보다 현실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反論은 사실 단순하다. 사회계약이 기초하고 있는 인민들의 同意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이 아니고 假說的(hypothetical) 상황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계약주의적 모델은 문자 그대로의 '계약'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설적 상황하에서의 구성원들의 만장일치적 합의를 통하여 수립한 사회구조의 틀은 그것을 절차적 正義(procedural justice)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점도 계약주의가 누리는 강점이다.<sup>3)</sup>

본 연구는 사회계약주의의 전통에 기초하여 인간이 社會를 구성하기 전에 인간이 처해 있는 아나키적 상황을 기술하고 分析하며,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一般的 同意에 의한 사회계약의 수립단계에 도달하게 되는가에 대한 경제학적 分析의 시도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아나키, 즉 무정부적 自然상태의 定義 및 그 자연상태의 구분 그리고 아나키적 상태의 특징과 아나키적 균형상태를 論議하고 분석한다. 제Ⅲ절에서는 게임이론적 接近으로 Hobbes에 의하여 기술된 불가피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다루며 그 극복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절에서는 자연상태에서의 協力과 이에 따른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제Ⅴ절은 요약과 결론부분이다.

## Ⅱ. 아나키의 특성 및 아나키적 均衡

Hirshleifer [10]는 아나키란 행위자들이 위로부터의 어떠한 규제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원을 탈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체제나 상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4)</sup>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結社의 과정은 다음 두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5)</sup> 사회계

2) 이에 관한 논의는 Hampton [8] 참조.

3) Rawls [14] 참조.

4) Hirshleifer [10] p. 27 참조.

약 前단계(pre-social contract stage 혹은 pre-constitutional stage)와 사회계약 後단계(post-social contract stage 혹은 post-constitutional stage)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사회계약 後단계는 구성원 一般의 合意에 의한 사회계약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단계를 말한다. 사회계약 前단계는 사회계약이나 헌법과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전혀 제기되지 않는 순전한 헌법무지적(constitution ignorant) 단계와 개인간 協力과 조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계약에 따른 所有權의 확립의 필요성을 깨닫는 헌법의식적(constitution conscious) 단계로 다시 구분지을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自然상태(state of nature)라고 말할 때는 개인이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든 안하든 그 차이는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엄밀하게는 Hobbes적 아나키 상태는 위에서 말한 헌법무지적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Rawls적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는 이 상황에 있는 합리적 개인들이 상호 協力の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Rawls적 원초적 상태는 헌법의식적 자연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상태를 특별히 Rawls적 단계(Rawlsian stage)라고 명명하겠다.

사회계약 무지상태의 아나키는 다시 두 단계로 세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자 그대로 無定型의 혼돈상태(amorphous chaos)와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를 지니는 아나키적 상태로 구분된다. 따라서, 후자의 상태에서는 아나키적 균형상태(anarchistic equilibrium)가 成立할 수 있다. Busch [6]와 Buchanan [5]이 도출한 바 있는 자연적 分布均衡(natural distribution equilibrium)은 바로 자연발생적 질서상태의 아나키를 分析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나키적 균형상태는 대단히 취약하고 安定的이지 못하여 Hirshleifer는 이 상태가 쉽게 무정형의 혼돈상태로 환원되거나 아니면 진화와 발전과정을 거쳐서 보다 정교한 위계질서 상태(hierarchy)로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나키로부터 발전된 사회단계를 Hirshleifer와 같이 연속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의 관점에서 아나키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계약과 같은 合意에 이르게 되는가가 分析의 초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나키에서는 기본적으로 제Ⅲ절에서 다루게 될 Hobbes적 투쟁상태인 소위 아나키적 함정상태에 빠져 있기가 쉽다고 본다. 그리고 이 상태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가를 다룬다. 그러면 아나키에서 개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가설적으로 상상해보기로 하자. Hobbes는 일찍이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war, as is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로 보았고 이 때의 개인의 생활은 “외롭고, 가난하고, 더럽고, 짐승 같고, 단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Schmidt-Trenz [17]는

5) 自然상태의 구분에 관해서는 Buchanan [4]과 Schmidt-Trenz [17] 참조.

이와 같은 Hobbes적 자연상태에서의 한 인간의 하루일과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sup>6)</sup>

앞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경제생활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sup>7)</sup> 생산활동, 타인의 생산물에 대한 약탈 및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방어 활동으로 대별된다. 약탈과 방어활동 같은 무력적 노력은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非生産的이지만(단순히 富의 移轉行爲일 뿐 생산물 자체가 증가되지는 않으므로) 개인의 효용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合理的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세 가지 경제활동에 어떻게 配分할 것인가는 결국 시간단위당 그 행위의 限界生産物의 크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각 행위의 한계생산물은 체감할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각 활동에 대한 時間配分은 결국 각각의 시간당 한계생산물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상태에서 결정될 것이다.<sup>8)</sup>

이러한 아나키적 상황에서 각 개인이 약탈-방어 활동의 非生産性을 점차 인식하게 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이 相互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회계약 무지의 단계에서 사회계약 의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자연발생적 질서가 가능한 아나키적 상태에서 Busch와 Buchanan은 所有權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적 分配상태의 均衡이 成立할 수 있음을 보였다. 所有權의 개념을 상정하면 아나키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만물에 대한 權利를 갖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他人의 목숨까지도(every man has a right to everything).

自然상태에서 生産物  $X$ 에 대한 개인  $i$ 의 所有權( $R$ )은 자신의 생산활동( $p$ ), 他人의 생

6) Schmidt-Trenz [17], pp. 239~240에서 인용, “어제 남은 식량으로 아침식사를 한 후에는 새로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 아침에는 식량( $X$ 財)을 생산하고 그의 창고에 쌓아 놓는다. 오후에는 참호와 함정을 파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들 것을 약탈할 계획을 세우고 어둠이 질 때까지 기다려 그 계획을 수행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청한 후 다음 날 아침 어제 약탈에 의한 수확물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지 않고 남은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한다.”

7) Busch와 Buchanan의 이론은 일종의 만나(manna) 모형이어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생산은 일종의 획득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약탈과 방어활동은 Busch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正義된다. 약탈이란 개인  $i$ 의 개인  $j$ 로부터의 생산물의 획득, 그리고 방어란 개인  $j$ 로부터의 자신(개인  $i$ )의 생산물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Buchanan은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방어-약탈활동(defense-predation effort)으로 한데 묶어서 하나의 활동으로 보았다. Busch-Buchanan의 모형보다 정교한 모형으로는 Skogh와 Stuart [16]의 論文을 들 수 있다.

8) 아나키에서의 인간활동을 위에서와 같이 분류하면 인간의 작업 또한 두 종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는 농부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강도일 것이다. 따라서, 두 직종의 인구分佈에 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농부와 강도가 적당히 共存하는 상태로 分佈되어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전 인구가 농부로부터 구성되어 있어 平和상태에 있는 경우이며, 셋째는 모두 강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전적인 경우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가능성은 生産된 재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存在할 수 없을 것이다.

산물에 대한 강제이전 혹은 약탈활동 및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방어활동( $t$ )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關係式으로 표시할 수 있다.

$$R^i(X) = r(\hat{p}^i, \hat{t}^i)$$

$r$  = 재화  $X$ 의 所有權에 대한 일종의 생산 함수

$\hat{p}^i, \hat{t}^i$  = 개인  $i$ 의 생산 및 약탈-방어 활동 수준

아나키 상태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잠정적인 자연발생적 질서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생산과 약탈-방어에 관한 時間配分을 더 이상 변경시키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상태가 곧 자연적 均衡상태(natural distribution equilibrium)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균형상태는 아나키에서  $n$ 명의 사람이 있을 때  $R^* = (R^1, R^2, \dots, R^n)$ 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때  $R^i = r(\hat{p}^i, \hat{t}^i)$ 이다. 이 균형상태의 의미는 개인  $i$ 가 자신의 최적의 시간배분 상태, 즉,  $(\hat{p}^i, \hat{t}^i)$ 에서 만약 자신의 두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변경하게 되면  $X$ 가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hat{p}^i, \hat{t}^i)$ 에서의 생산과 약탈-방어 활동의 시간당 한계생산물의 가치는 같은 상태이며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이 자연적 균형상태는 Nash 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Ⅲ. 아나키의 함정

아나키적 自然상태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연발생적 질서의 토대 위에 균형상태에 머무르게 되거나 나아가서 더 발전된 형태의 질서체계를 갖지 못하고 Hobbes가 묘사한 대로 혼돈과 투쟁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결과는, 바로 Hobbes의 인간 本性에 관한 비관적인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Hobbes 자신이 人間の 本性이 호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종국에는 투쟁상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Hobbes적 견해는 게임이론에서 이미 알려진 바대로 '최수의 딜레마'의 상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자연상태에서의 각 개인은 자신들 모두에게 더 나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合理的 행동의 결과 더 나쁜 상태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 함정을 여기서는 아나키적 혹은 Hobbes적 함정(Hobbesian Trap)이라고 부르겠다.<sup>9)</sup>

9) 이러한 자연상태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Varoufakis [21]는 Hobbes의 저서를 인용해서 Leviathan 함정이라고 불렀다.

우선 기본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도입해서 아나키의 함정을 다시 살펴보자.

		개인 乙	
		(호전적)	(평화적)
개인 甲	(호전적)	(2, 2)	(7, 1)
	(평화적)	(1, 7)	(5, 5)

팔호 안은 아나키적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量을 표시한다고 하자.<sup>10)</sup> 여기에서 支配的 전략(dominant strategy)은 甲, 乙 모두에게 호전적 전략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지간에 호전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쌍방이 平和的 전략을 택한다면 그 결과는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나 각 개인의 合理的인 행동의 결과 더 나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쌍방이 본질적으로는 Hobbes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미 언급한 대로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목적 때문이고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며 따라서 비관적인 결과, 곧 Hobbes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평화를 원하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갈등이 추구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合理性이 共同的인 합리적 結果를 초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나키상태에 대한 Hobbes의 비관적 견해는 그로 하여금 이 피할 수 없는 함정을 극복하고 피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대한 表기구, 즉 國家와 같은 組織을 아나키적 상태에 도입하여 개인간의 갈등을 줄이는데서 찾는다. 개인들은 무정부적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자유와 권한을 어느 정도 거대한 기구인 國家에 위임 혹은 양도해야 하며 國家만이 투쟁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sup>11)</sup>

그런데 Hobbes적 견해에 충실히 따르면 각 개인은 보다 나은 개인적 厚生을 위해서 제삼의 超人인 國家와 개인적 權限의 포기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이 된다. 즉, 個人과 國家 간의 계약이다. 그러나, Rawls와 Buchanan의 新社會契約主義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있어서 국가나 政府의 역할은 완전히 빠져 있다. 다만, 국가나 정부의 구성을 결정할 헌법과 같은 制度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個人들의 만장일치적 合意의 도출이 중요한 요체가 된다.<sup>12)</sup> Hobbes와 같이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의 도입으로 이 함정의 딜레마

10) 만약 우리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線形效用 함수(즉,  $U_i = X_i$ )를 가정한다면 팔호 안의 숫자가 곧 효용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11) 國家의 出現에 관한 놀랄만큼 엄밀한 논의는 Nozick [13]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個人의 所有權을 보호해 주는 私的인 보호조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組織들간의 自由로운 경쟁을 통하여 하나의 獨占的인 지위를 누리는 기구가 出現할 수 있고 이것이 곧 Nozick이 命名한 最小國家(minimal state)이다.

를 즉시 해결하는 方法을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더 微視的으로 검토해 보자. Varoufakis [21]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合理的인 행위자들이 共同的으로 非合理的인 結果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해결 方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아나키적 함정으로부터의 탈출가능성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方法은 개인적 選擇을 制限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Hobbes적 해결방법으로 國家에 의한 個人的 自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國家權力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적 價値가 개인의 전략적 선택을 한정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가령 Locke적인 개인의 自然權(Lockean natural rights)을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相互 인정하는 경우가 한 例가 될 수 있다. 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相互 自然權의 존중이 호전적 전략의 선택을 不可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아나키적 함정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法은 이 함정의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選擇의 가능성을 지워버림으로써 문제 자체를 없앴다고 할 수 있다(solve the problem not by illuminating it, but by eliminating it).

두 번째 가능성은 Hobbes의 人間觀과는 달리 Hume의 人間觀에 의거해서 각 개인이 共同體의식을 갖고 있다고 前提하는 것이다. 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公共財 生産의 경우로 치환해서 보면 각 개인은 공공재 생산에 參與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두 사람(혹은 그룹) 중 어느 한 쪽이 두 선택의 代案에 대해서 Hume적인 선호체계(Humean preferences)를 갖고 있다고 하면 위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다음과 같은 行列로 바뀔 것이다.

		개인 乙	
		(참여)	(불참)
개인 甲	(참여)	(7, 5)	(-1, 7)
	(불참)	(5, -1)	(2, 2)

여기에서는 甲이 Hume적 선호체계를 갖는다. 즉, 甲의 선호체계에 의하면 공동참여의 경우를 오히려 乙이 참여하고 자신이 무임승차하는 경우보다 甲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乙이 확실히 불참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신도 참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이다.

이 상황에서 甲이 지배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乙의 경우 不參與의 경우가 지배적 전략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支配的 전략의 均衡상태는 存在하지 않

12) 보다 Hobbes적 견해에 따르는 사회계약과정에 관해서는 Holcombe [12] 참조.

으나 Nash적 균형상태는 존재할 수 있다. 즉, 쌍방 모두가 불참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甲은 乙의 참여 약속에 대한 위반 위험성을 두려워하게 되며, 따라서 Hobbes적 아나키 상태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비관적 투쟁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함정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만약 乙도 甲과 같이 Hume적 선호체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사람의 청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이다.

		개인 乙	
		(참여)	(불참)
개인 甲	(참여)	(7, 7)*	(-1, 5)
	(불참)	(5, -1)	(2, 2) <sup>+</sup>

이 경우도 우선적 지배전략은 存在하지 않지만 균형상태는 唯一하지 않고 두 개의 Nash均衡이 생긴다. 하나는 Pareto 우월한 상태(\*표)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Pareto 열등한 아나키 상태(+표)이다. 쌍방 모두 協力の 價値는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방의 협력약속 위반의 위험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두 개의 Nash均衡상태가 存在할 수 있다는 위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무정부적 아나키상태에 대한 Hobbes의 주장의 강도를 크게 줄이고 있다. 즉, 아나키에서는 거대국가의 개입 없이는 만인의 끝없는 투쟁상태가 필연적으로 계속된다는 Hobbes의 命題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면 Pareto 우월한 균형상태와 열등한 균형상태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순전히 쌍방간의 신뢰의 정도에 달려 있다. 쌍방이 서로에게 相互共通의 確信(common assurance)을 갖고 있다면 Pareto 우월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쌍방 모두가 신뢰의 가능성에 회의적이 될수록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無知 할수록 쌍방은 最大最少전략(maximin strategy)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열등한 균형상태인 Hobbes적 함정은 필연적이 된다.<sup>13)</sup> 따라서, 아나키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집단적 연대감을 갖거나 더 나아가서 타인의 소유나 財產權을 존중하게 집단적 양심이나 혹은 他人의 厚生에 대한 동정심과 같은 일종의 內部化된 제약을 각 개인들이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sup>14)</sup>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線形의 불록組合(linear convex combination)모양의 同情心이 포함된 一般的인 효용함수를 생각해 보자.

13) Rawls의 원초적 상태에서도 모든 개인들이 無知의 장막 속에 있게 됨으로써 개별적인 능력이나 選好 혹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 있게 되어 합리적 행위자들은 필연적으로 최대최소 전략을 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14) Arrow [1]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선호체계를 확장적 동정심(extended sympathy)이라 부르고 이를 포함하는 效用函數에 입각해서 사회적 선택이론을 전개하였다.



$$U_i = \lambda X_i - (1-\lambda)|X_i - X_j| \quad (0 \leq \lambda \leq 1)$$

여기서  $X_i$ 는 개인  $i$ 의 몫이고,  $\lambda$ 는 이기심의 정도를 표시하는 파라미터이다. 이 때  $\lambda = 1$ 이면 일반적인 利己의 효용함수가 된다. 효용함수의 절대값 項은 他人에 대한 同情心 혹은 公平(equity)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다.

이제 위에서 말한 公共財게임의 行列을 다음과 같이 代表로 표기하고 이 경우의 甲의 效用만을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인 乙	
		(참여)	(불참)
개인 甲	(참여)	(a, a)	(d, c)
	(불참)	(c, d)	(b, b)

甲의 效用

甲의 效用		개인 乙	
		(참여)	(불참)
개인 甲	(참여)	$\lambda a$	$\lambda d - (1-\lambda)(c-d)$
	(불참)	$\lambda c - (1-\lambda)(c-a)$	$\lambda b$

이 때 아나키적 함정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lambda b > \lambda d - (1-\lambda)(c-d) \Rightarrow \lambda < \frac{a-d}{c-d} \tag{1}$$

$$\lambda a > \lambda c - (1-\lambda)(c-a) \Rightarrow \lambda < \frac{c-d}{a-d} \tag{2}$$

이 경우 아나키적 함정이 人間이 얼마만큼 利己의이어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므로 위의 條件 (2)만이 경제적으로 有意하다.

따라서,  $\lambda > \frac{c-d}{a-d} = k_0$ 라고 하면  $\lambda > k_0$ 일 때 비관적인 아나키적 함정에의 유혹을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뿌리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 合理性에 의한 투쟁상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lambda > k_0$ 의 상태이면, 다시 말해서 利己心の 정도가 어떤 값, 즉  $k_0$ 보다 작다면 共同體의 연대의식 혹은 他人에 대한 同情心の 발로가 共同의 協力を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더 나은 Pareto 우월한 Nash均衡상태에 도달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人間性에 대한 Hobbes적 견해와 Hume적 견해의 차이는 바로 공동체적 연대감(solidarity)이나 他人에 대한 同情心の 정도 차이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Hobbes적 인간은 높은  $\lambda$ 값을 지니는 特性을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강한 本性 때문에 共同的 合理的인 더 나은 結果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실패하고 만다. Hobbes적 인간은 비교적 낮은  $\lambda$ 값을 가지며, 따라서 共同的의 목적과 善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人間本性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본다면 값은 결국 각자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도 달려 있게 된다. 나아가서  $\lambda$ 값은 利他的 同情心을 가진 사람들의 수의 함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구에 의해서 아나키적 함정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아나키에 약탈행위는 그것이 약탈자의 厚生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의 法律組織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자연상태에서 각자에게 正當한 所有權을 確立하는데 있으며 나아가서 他人의 所有權을 존중하고 社會的 協力을 이끌어 내고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者들을 응징하는데 있다.

위에서 본 公共財게임에서 이 경우를 다시 보면, 社會制度의 非協助者들에 대한 감시와 강제하는 기능을 집어 넣어야 한다.<sup>15)</sup> 그러면 만약 정부가 공공재 생산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他人의 財產權을 침해하는 경우에 벌금으로서 응징한다고 하자. 가령 -8만큼의 효용의 감소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公共財게임의 청산행렬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개인 乙	
		(질서 존중)	(질서 파괴)
개인 甲	(질서 존중)	(5, 5)	(1, -1)
	(질서 파괴)	(-1, 1)	(2, 2)

따라서, 정부의 응징역할 때문에 쌍방 모두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지간에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지배적 전략이 되며 아나키적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제도의 이탈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 및 응징의 역할이 결국 개인들의 기회주의적인 이기적 행동을 制限하게 만든다.<sup>16)</sup>

15) 社會制度의 存在下에서의 個人들의 전략적 行動모형에 관해서는 Thompson과 Faith [20] 참조.

16) 效率性의 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國家制度의 도입은 각자의 개인적인 감시와 응징의 비용의 습보다 집단적인 감시와 응징의 비용이 작을 때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 IV. 아나키, 協同 그리고 社會契約

일단의 理想的 社會主義者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바로 무정부적 자연상태라고 주장한다. Buchanan 역시 그의 저서 『自由의 限界』에서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어느 누구 혹은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는 自由가 보장된 자연상태는 理想的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이상적 社會의 前提가 되는 條件들이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ceteris is not paribus).<sup>17)</sup>

그 이상적 사회의 前提條件들을 끊임없이 변경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자연상태에서 개인간 이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Buchanan은 그 이해의 갈등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假意하듯이 자원의 稀少性에서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지 않는다. 개인간 社會的 갈등은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sup>18)</sup>

그러나, 만인의 투쟁상태에 있는 아나키 상태에서 Hobbes가 묘사한 대로 인간들은 이상적 상태와는 전혀 달리 대단히 비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서 자연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조건에 있는 사람 역시 생활수준은 대단히 낮은 상태일 것이다. 가장 단순한 2인 社會(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약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생산해 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약탈에 의해서 강자는 얼마큼 厚生水準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대단히 否定的일 것이다. 약자가 자기의 生産量을 빼앗길 것을 아는 한, 생산할 인센티브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삼고 생산을 강요하는 社會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노예들의 태업(shirking)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生産의 인센티브는 제고될 수 없다.<sup>19)</sup>

生産에 대한 인센티브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쌍방간의 合意에 의해서 강자나 약자의 産出의 一定比率를 가져가기로 事前的으로 약정을 맺거나 더 나아가서 協同에 의한 共同生産을 통해서 그 生産量을 一定基準에 의해서 分配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17) Buchanan [5], p. 92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that the ideal society is anarchy, in which no one man or group of men coerces another."

18) Buchanan은 심지어 천국에서도 사회적 갈등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5], p. 23, "Social strife might arise in paradise."

19) 古代 노예 社會에서의 생산의 非效率性이나 東歐 社會主義體制의 統制經濟의 몰락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것이다. 그러면 쌍방간의 厚生水準도 동시에 向上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協商에 의한 결과는 쌍방간에 權利關係를 태동시키게 되며 이러한 權利의 構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규칙의 형태로 合意될 수 있다면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나키적 상태보다 相互간에 利得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구성원들 사이의 권리관계 및 生産 양식에 관한 기본적 틀을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헌법적 특징을 갖는다. 헌법과 같은 사회적으로 명시적인 制度나 규제장치가 存在하지 않더라도 自然상태에서도 規律이 存在할 수 있다.<sup>20)</sup>

첫 번째는 自己統治(self-government)의 例이다. 자연 상태에서 Crusoe와 같이 고립된 인간도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강제적 실행방법의 하나가 '자명종 의 사용이다. Crusoe는 이 자명종으로써 '그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Crusoe는 이와 같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을 통해서 자신을 규제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자신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자신의 效用을 늘린다는 점을 Crusoe는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상태에서도 存在할 수 있는 규범적 契約과 論理的 基準이다. 이것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價値觀을 반영한다. 따라서, 만장일치적인 同意를 얻어낼 수 있다. 가령 살인이나 강도 행위의 금지와 같은 윤리의식이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제Ⅱ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오스와 같은 無定型的 혼돈상태가 아니라 Locke가 상정하는 바와 같이 각 개인이 천부적으로 인정되는 自然權을 所有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無定型的 자연상태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할 수 있는 비갈등적 慣習(conventions)을 들 수 있다. 아나키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혼란이 초래하게 되는 非效率과 費用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높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사람들의 행위의 다양한 방식을 慣例로써 定型化하는 것이다. 가령, 교차로에서의 통행방식이나 의 사소통에 있어서의 언어文法の 定型化가 대표적인 例가 될 것이다. 社會進化論者들은 이 세 번째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사회의 점진적 進歩와 發展의 원동력을 바로 自然發生的 慣習과 規範의 定型化에서 찾는다.<sup>21)</sup>

이와는 달리, 사회계약主義의 입장에서는 合理的이고 이기적인 사회참여자들이 사회구조에 관한 기본적 틀을 만장일치적 同意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결정된 制度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개인간 이해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Hobbes적 아나키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

20) Reisman [15], 2장 참조.

21) 社會慣習과 규범의 生成과 發展에 대한 進化論者 接近方法에 관해서는 Sugden [18], [19]과 Axelrod [2] 참조.

원들간에 協同과 合意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는가 살펴보자.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利己心이다. 각 개인은 확률적으로 무차별하게 分布되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한다. 그런데 모든 개인이 자신들의 利己의 동기와 選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制度에 관한 合意를 만장일치로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같은 基礎制度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만장일치적 同意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적 특징에 관한 지식이 차단되는 不確實性的의 條件이 필수불가결하다. 이 때 불확실성이 갖는 特性은 바로 확률적 無差別性(randomness)과 無知(unknowledge)이다. 이는 Rawls가 원초적 상태에서 상정한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상적 條件과 一致한다.<sup>22)</sup>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개인은 헌법과 같은 기본적 사회의 틀을 채택하는 時點에서는 헌법 채택 이후의 미래에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不確實하며, 따라서 合理的 인간은 이기심에 이끌려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최선의 규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원초적 상태에서는 모든 개인의 특권이나 특징이 무지의 장막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으므로 자연상태에서의 원초적 平等性(primitive equality)이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 평등성이 Rawls에게 있어서 그의 원초적 상태에서의 사회계약이 正義로울 수 있다는 주장의 토대가 된다. 또한, 어떠한 개인적 특권이나 능력에 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사회계약을 위한 協商에서 특별히 어느 누구나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의 기본틀에 관해서 어느 한 合理的인 代表人(representative agent)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만장일치적 合意에 이르게 된다.

Hobbes적 아나키에 대한 Buchanan의 理論은 Rawls처럼 규범적 모형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실증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장일치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 Rawls가 전제한 원초적 평등성 같은 外部的 制約條件이 없다.

무지의 장막처럼 어떤 개념도 우월한 협상력이 없고 따라서 비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고 Buchanan에 있어서는 오히려 協商과정에서 원초적 평등상태 대신에 강자는 힘의 행사를 위협할 수 있고 바로 이 위협의 힘(threat value) 때문에 약자가 그 위협의 행사의 위험을 인지하는 한 협상은 合意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正義에 관해서도 Buchanan은 Rawls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즉, Buchanan은 Rawls와는 달리 사회계약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Rawls가 주로 만장일치적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의에 그의 論議의 초

22) Rawls 자신도 그가 설정한 原初의 상태가 일반적 사회계약론자들이 전제하는 自然狀態와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4], p. 12.

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Buchanan에 있어서 正義란 어떤 독립된 개념체제를 가진다기보다는 그것은 일종의 파생적 개념에 불과하다. 그에게 있어서 정의란 同意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派生되어 나온다(justice is rooted in consent). 그리고 그 同意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自由의사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는 Buchanan의 正義 개념을 '파생적 正義'라고 부르겠다.

어떤 규칙이 公正(fair)하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경기자들이 그 규칙에 同意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그 규칙이 公正하기 때문에 경기자들이 同意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즉, 어떠한 規則이든 그것이 자유롭게 제약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순수한 合意의 產物일 때만 그 규칙이 公正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自然상태 혹은 원초적 상태가 均衡상태에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Buchanan과 Rawls의 입장은 다르다. 즉, Rawls에 있어서는 원초적 상태가 균형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상태가 平等한 상태라는 점만이 중요하다. 반면 Buchanan의 경우에는 아나키의 자연상태에서 균형상태가 존재하며 그러한 균형상태가 만인이 공통의 사회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또한, Buchanan에 있어서 Rawls와 반대로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이 자연적 平等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에 각 개인이 자연상태에서 불평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상을 통한 사회계약 이후의 상태에서도 不平等이 생기게 된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자연상태에서 개인간 능력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곧 사회제도의 수립과정에서 協商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모든 개인들의 자발적 同意에 기초하는 한 헌법 後의 상황에서의 所有權의 不平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Buchanan의 '파생적 正義'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자연상태에서의 不平等이 사회계약 이후의 所有權 分配로의 不平等으로 반영되는 것이 不公正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Buchanan과 Rawls流의 社會契約主義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合理的 행동에 관하여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사회계약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일단 사회적 合意에 의한 제도나 규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사회계약 後의 사회에서는 個人的 自由로운 선택행위는 그 규칙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하에서의 경제적 행동은 Becker타입의 전통적 경제이론에 의한 合理的 選擇 행위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sup>23)</sup>

Becker에 의하면 소주를 마실까, 맥주를 마실까 하는 소비자의 선택행위와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選擇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선

23) Becker [3] 참조. 또한, 사회계약主義下에서의 범죄와 法制度에 관해서는 Skogh와 Stuart [16] 참조.

택은 그 경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의 크기에 달려 있다. 또한, 그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체포될 確率에도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처벌 혹은 벌금이란 결국 非合理的 行위에 대한 대가, 즉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회계약주의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경제행위의 자유로운 선택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주의에서 보는 경제적 인간은 개인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규칙을 받아들이는 한 Becker의 경우에서처럼 利得과 처벌을 交換할 權利가 더 이상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社會내의 個人은 사회적 秩序에 그의 同意를 이미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구성원들이 제한된 선택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회계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은 물론 사회계약 後의 상태에서 각 개인들의 厚生 수준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높아진 厚生수준은 共同社會에서의 協力과 共同生産에 의한 잉여가치의 生産 덕분이다. 그러면 社會共同體 안에서의 協同과 共同生産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잉여가치의 分配문제를 살펴보자. 아나키적 자연상태에서의 개인들은 사회계약 인식의 단계에 들어가면 相互間的 協력이 모두에게 유리함을 인식하게 된다. Buchanan의 경우는 Rawls와 달리 그 協同의 결과 생기는 잉여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본다.<sup>24)</sup>

다만, 자연상태에서 각 개인들은 협력에 의한 共同生産에서 각자가 맡게 될 역할이 잉여가치의 分配方式이나 각자의 증대된 한계생산력에 관해서는 無知하다고 본다.<sup>25)</sup>

이제 두 사람만 存在하는 2人 社會를 설정하자. 그리고 두 사람이 相互 協同에 의해서 共同生産에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쌍방이 자신의 공동생산에서의 能力이나 역할을 모르며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도 不確實한 상태에서 어떻게 잉여생산이 분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Buchanan의 모델에서는 쌍방이 모두 자신이 원하면 共同生産에서 원래의 Hobbes적 아나키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을 假定하고 있다.<sup>26)</sup>

쌍방 모두에게 이와 같은 자연상태로의 회귀의 위협이 똑같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에

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회계약의 協商과정에서 Buchanan의 개인들은 Rawls의 개인들보다 '얇은' 무지의 장막 속에 놓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5) Buchanan [4]에 의하면 공동생산을 통해서 잉여생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의 例로 어부의 생산활동을 들었다. 낚시에 의존하던 개별적인 어부의 생산은 協同을 통해서 공동생산을 하게 되면 보트와 같은 公共財를 사용하게 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 때 공동생산에서의 각자의 노동의 限界生産物은 아나키의 생산량과 共同生産에 의한 산출량의 차이로 측정된다.

26) 이것은 2人 社會의 경우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회구성원이 많아져서 일반적으로  $n$ 名이라고 하면 이 때 아나키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한 개인의 시도는 共同生産의 사회구조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우에서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경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

서는 한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配分상태는 成立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쌍방은 Nash的 協商의 결과와 같이 잉여가치를 均等하게 배분하는데 同意하게 될 것이다. 이 논리는 아나키에서 個人間 能力이 다를지라도 相互間에 대칭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存在하는 경우 均等 配分點의 社會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均衡상태는 均등배분점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不均等의 分配상태에서 적은 쪽의 몫이 均등분배 상태에서의 몫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社會의 均衡점은 이와 같은 Pareto 우월한 점으로 移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산의 인센티브에 있다. 만약 쌍방 중 더 능력있는 자에게 더 많은 몫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공동생산의 잉여가치는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 능력없는 쪽에게 돌아가는 몫이 均等배분의 몫보다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가 바로 Rawls가 그의 正義의 두 번째 原則으로 명명한 '差等의 原則'(difference principle)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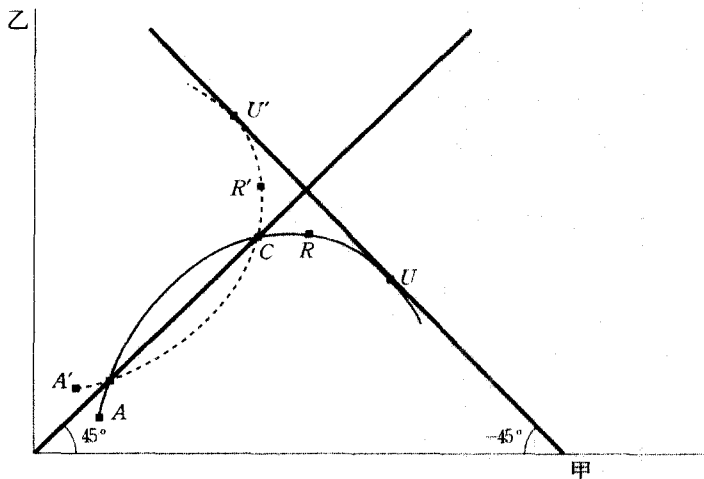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동생산의 分配에 관한 논의는 <그림 1>과 같이 표시하면 간명해진다.

그림 1에서 아나키적 상태는 두 사람의 몫이 모두 대단히 낮은 점 A로 표시된다. 공동 생산을 하는 경우 생산과 배분의 몫은 生産可能曲線을 따라 증가한다.

공동분배점은 각자의 몫이 훨씬 증가한 점 C가 되며 Rawls의 차등의 원리가 적용되는 점은 점 R이다. 그림에서 점선의 生産가능곡선은 능력있는 쪽이 甲이 아니고 乙인 경우로 점 A', R'은 점 A와 R의 각각 대칭점이 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점 U로 이 점은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의 합이 最大

<그림 1> 공동생산의 分配





가 되는 경우이다. 이는 사회적 총생산을 극대화시키는 公利主義的(utilitarian) 원칙에 따른 생산 및 분배점이다.

Harsanyi [9]에 의한 新公利主義 이론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에서 각자가 미래에 자신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不確實한 경우에 合理的인 행위자는 모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均一한 確率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 모델은 均등확률적 모형(equi-probability model)이라고 한다.

이 때 개인은 기대수입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추구하게 되며 따라서 이 경우 사회적 총생산 혹은 平均의 生産을 극대화하게 되는데 <그림 1>에서는 점  $U$ 가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이 때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른 分配상태에서 열등한 사람의 몫이 공동생산의 均등배분점  $C$ 보다 작다면 그 사람은 Hobbes적 아나키로의 회귀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아나키에서 合理的 선택자들은 公利主義的 原則에 同意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論理가 Buchanan으로 하여금 Harsanyi 타입의 공리주의적 원칙을 거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 V.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는 아나키의 自然상태에 대한 경제학적 分析을 시도하였다. 아나키적 투쟁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만장일치적 合意를 통해 사회계약을 수립하게 되며 나아가서 보다 協同的이고 질서가 잡힌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이 本考의 주제이다.

제Ⅰ절에서는 아나키적 自然상태의 性格을 새롭게 범주적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나아가서 아나키의 均형상태의 특성을 論하였다. 제Ⅱ절에서는 아나키적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는 함정을 게임이론적 테두리 안에서 分析하였고 그 탈출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채널을 검토하였다. 제Ⅳ절에서는 아나키에서 수립하게 되는 만장일치적 사회계약의 도출과정과 특성을 주로 Buchanan과 Rawls의 입장에서 접근하였고 協同을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그 分配문제도 다루었다.

아나키에 관한 論議는 Hobbes 이래 수많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에 관한 여러 理論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新社會契約主義의 부활이래 경제학자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사회계약에 대한 새로운 경제학적 이해가 헌법경제학(constitution economics) 혹은 新政治經濟學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경제이론적 分析은 앞으로도 좋은 탐구의 대상이다. 아울러 사회계약주의와 다른 方法論으로서 進化主義的 接近방법도 아나키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로의 변환에 대해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Arrow, Kenneth J., "Extended Sympathy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Choice," *American Economic Review*, Feb. 1977, pp. 219~225.
2. Axelrod, 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1984, New York : Basic Books.
3. Becker, Gary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r./Apr. 1968, pp. 169~217.
4. Buchanan, James M., "A Hobbesian Interpretation of the Rawlsian Difference Principle," *Kykols*, 29, Fasc. 1, 1976, pp. 5~25.
5. \_\_\_\_\_, *The Limits of Liberty : Between Anarchy and Leviathan*, 1975,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6. Bush, Winston C., "Individual Welfare in Anarchy," pp. 5~18, in Gordon Tullock, *Exploitations in the Theory of Anarchy*, Blacksburg :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1972.
7. Gordon, Scott, "The New Contractari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3), 1976, pp. 573~590.
8. Hampton, Jean, "The Contractarian Explanation of the State," pp. 33~60, in William Booth (ed), *Politics and Rationality*, 1993, Cambridge Univ. Press.
9. Harsanyi, John, "Can the Maximin Principle serve as a Basis for Morality? A Critique of John Rawls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1975, pp. 594~606.
10. Hirshleifer, Jack, "Anarchy and Its Breakdow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 1995, pp. 26~52.
11. Hobbes, Thomas, *Leviathan*, 1957, Oxford : Basil Blackwell.
12. Holcombe, Randall, G.,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 1994, New York Univ. Press.
13.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New York : Basic Books.
14.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1971,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5. Reisman, David, *The Political Economy of James Buchanan*, 1990, London : MacMillan Press.

16. Skogh, Goran and Charles Stuart, "A Contractarian Theory of Property Rights and Crim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84(1), 1976, pp. 27~40.
17. Schmidt-Trenz, Hans Jörg, "The State of Nature in the Shadow of Contract Formation: Adding a Missing Link to J. M. Buchanan's Social Contract Theory," *Public Choice*, 81(3), 1989, pp. 237~251.
18. Sugden, Robert, "Spontaneous Ord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Fall 1989, pp. 85~97.
19. \_\_\_\_\_, "Contractarianism and Norms," *Ethics*, Jul. 1990, pp. 768~786.
20. Thompson, Earl A. & Roger L. Faith, "A Pure Theory of Strategic Behavior and Social Institu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 1981, pp. 366~380.
21. Varoufakis, Yanis, *Rational Conflict*, 1991, Cambridge Univ. Press.